

[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안내]	
수집·이용 목적	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계정 발급 및 시스템 지원
수집·이용 항목	성명, 부서/회사명, 전화번호, 직급/직위, 이메일 주소, 사용목적, ID
보유·이용 기간	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초고성능컴퓨터 사용 희망 기간(기본 5년)
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	초고성능컴퓨터 계정 발급 및 사용자 지원 불가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여부	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

[초고성능컴퓨팅 사용자 의무 및 계정 이용 관련 보안 규정 안내]	
제18조 (사용자의 의무)	<p>①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 또는 개발된 결과를 논문, 학술발표회, 언론매체 보도, 산업재산권, 기타 형태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이 내용이 기록된 논문, 발표초록 등의 활용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사용자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, 자신의 프로그램을 최적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자 프로그램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운영자의 수정 권고가 있을 시 반드시 따라야 한다.</p> <p>③ 사용자는 부여받은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사용자는 초고성능컴퓨터 사용 신청 시 요청한 시스템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스템의 사용자 자료 일체를 백업받아야 한다. 운영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경과 후 자료를 삭제하여 자원을 재활용한다.</p> <p>⑤ 사용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관리자의 결정에 따라 교육이 면제될 수 있다.</p>
제21조 (사용자계정의 해지 및 제한 사유)	<p>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자 계정을 해지 및 제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초고성능컴퓨터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고 관련된 후속업무가 계속되지 않는 때 2. 사용자로서 퇴직, 전보, 휴직 등의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업무관련성이 해소된 때 3. 사용신청서 상의 사용요청기간이 만료된 때 4.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할당된 자원 이외의 이중 또는 과다 사용 등으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5.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보안정책에 위배한 때 6.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, 운영위원회에서 해지를 결정한 때 7. 관리자에게 부여받은 계정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때 8. 관리자는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 및 장애를 초래한 사용자에게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다.

